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가. 학교용지 · 교사(校舍) 현황

① 교지 및 교사 면적

공시지침

공시기관 : 전 체

공시시기 : 매년 5월 (연1회)

공시내용 :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면적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24년 5월 8일)

(단위 : ㎡)

교지면적			부속토지	합 계	공동사용여부
교사대지	체육장	계			
54,213㎡	4,670㎡	58,883㎡	297㎡	59,180㎡	X

작성자 : 박영석 (051-606-2121) 확인자 : 고경민 (051-606-2110)

② 교사 시설 용도별 현황

(단위 : 실)

교수/학습공간					교원편의시설	관리/지원공간	체육/집회공간	보건/위생공간			급식공간	기숙사실수	기타공간	교사연면적	비고 (건축년도)
정규교실	도서실(관)	시청각실	특별교실	기타교실				보건실	학생탈의실	화장실					
22	10	1	66	9	30	105	3	1	15	104	3	271	43	36,635㎡	교사동(1998) 창조관(2003) 설동근관(2005) 게스트하우스(2007) 교사용식당증축(2010) 게스트하우스증축(2010) 남자자기숙사증축(2010) 드림디자인센터(2017)

작성자 : 박영석 (051-606-2121) 확인자 : 고경민 (051-606-2110)

나. 각종 지원시설 현황

①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공시지침

공시기관 : 전 체
공시시기 : 매년 5월 (연1회)
공시내용 :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 (자료기준일 : 2024년 5월 8일)

(단위 : 실, 명, 개)

체육관	강 당	기숙사 수용인원	도서실 총좌석수	수영장	영어체험 (전용)교실	진로상담실	기 타 (휴게실,동아리실등)	공동사용여부
1	2	396	332	무	7	유	22	X

작성자 : 박영석 (051-606-2121)　　확인자 : 고경민 (051-606-2110)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공시지침

공시기관 : 초, 중, 고, 특, 각
공시시기 : 매년 5월 (연1회)
공시내용 :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종류, 이용수칙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
공시양식 : 다음 양식을 적용하고, 이용 수칙 및 신청서는 PDF파일로 탑재(단위학교 자율양식)
(자료기준일 : 2024년 5월 8일)

① 학교시설 개방 여부

구 분	운동장	체육관	강 당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개방 여부	○	○	○	○	○	○

작성자 : 박영석 (051-606-2121) 확인자 : 고경민 (051-606-2110)

②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 : PDF 파일로 저장하여 탑재

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
○	○	○	○	○	○	○

작성자 : 박영석 (051-606-2121)　　확인자 : 고경민 (051-606-2110)

한국과학영재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및『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학교 강당 및 운동장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자: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각종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이용자의 신고 및 사용허가) 이용자는 소정의 신청서(별표-1)를 사용예정일 15일 이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리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납부)

① 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별표-2)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허가 받은 후 당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원상복구) 이용자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및 사용전후 확인 유무)

①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② 사용자는 학교강당 및 운동장 사용 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사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여야 한다.

제7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리자는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학교 강당(다목적교실) 및 운동장의 유지관리비는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때 또는 또는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전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12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교육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1)

학교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

1. 사용일시 : 년 월 일(요일), 시 ~ 시
2. 사용신청기관명 : (전화 :)
3. 인솔책임자 : 소속_____ 직책_____ 성명_____
4. 사용인원 : 명
5. 사용목적 :
6. 사용시설명 :

귀교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기물 및 시설물 파손시는 즉시 변상하고, 사용 후 쓰레기수거 및 주변청소를 깨끗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장 귀하

.....

학교 시설물 사용 허가서

1. 사용일시 : 년 월 일(요일), 시 ~ 시
2. 사용신청기관명 : (전화 :)
3. 사용인원 : 명
4. 사 용 료 :
5. 사용료 입금계좌 : 부산은행 054-01-038291-1(예금주 : KAIST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6. 사용료 입금기한 : 시설물 사용예정 전일까지 위 계좌로 입금완료 하여야 합니다.

귀교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기물 및 시설물 파손시는 즉시 변상하고, 사용 후 쓰레기수거 및 주변청소를 깨끗이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장

(별표-2)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table>
<tr><th rowspan="2">시 설 명</th><th colspan="8">사 용 료 (원)</th><th rowspan="2">비 고</th></tr>
<tr><th>1시간</th><th>2시간</th><th>3시간</th><th>4시간</th><th>5시간</th><th>6시간</th><th>7시간</th><th>8시간</th></tr>
<tr><td>일반교실</td><td>5,000</td><td>10,000</td><td>15,000</td><td>20,000</td><td>25,000</td><td>30,000</td><td>30,000</td><td>30,000</td><td rowspan="4">1실 기준</td></tr>
<tr><td>시청각실</td><td>25,000</td><td>25,000</td><td>50,000</td><td>50,000</td><td>100,000</td><td>100,000</td><td>100,000</td><td>100,000</td></tr>
<tr><td>특별교실</td><td colspan="8">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및 관리비용 별도 추가</td></tr>
<tr><td>체육관
대강당
중강당
공동강의실
회의실</td><td>20,000</td><td>30,000</td><td>40,000</td><td>50,000</td><td>70,000</td><td>80,000</td><td>90,000</td><td>100,000</td></tr>
<tr><td>운동장
테니스장</td><td colspan="8">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td><td></td></tr>
<tr><td>기 타</td><td colspan="9">1.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 및 조건에 대해서는 유사기관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인원규모 및 시간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2. 학교장은 사용자의 인원규모, 시간 및 사용조건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상기 금액과 달리 징수할 수 있음.</td></tr>
</table>